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환경수자원위원회 박 중 화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1선거구 박중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직접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2월 3일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방의회가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원이 의회 내 발언한 내용에 대한 면책특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헌법(제45조)에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발언에 면책특권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은 발언에 대해 민사·형사상 책임을 별도로 질 수 있는 등 제약을 가져옴으로써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으며,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의원이 다양한 사회적, 지역적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의정활동이 위축됨과 동시에 의회 본래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 기능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원에게도 면책특권 부여를 통해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치적·사회적 논쟁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끔과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의사전달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의사결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에게도 의회 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면책특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